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89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0.

발 의 자: 권성동・송기헌・구자근

윤창현 • 태영호 • 서정숙

한기호 · 이철규 · 유상범

이양수 · 정청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은 사치·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1973년에 도입되었음.

그런데 47년이 흐른 현재,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여행 및 레저 활동의 보편화,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의도입 등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어촌 지역에 휴양·피서·전원생활용 주거시설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

또한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따라서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형 태 및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장려하며,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 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장을 현행법 상의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(안 177조제1호 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558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7조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7조(감면 제외대상) 이 법의	제177조(감면 제외대상)
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	
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	
1. 별장: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	<u><</u> 삭 제>
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	
고 휴양·피서·놀이 등의 용도	
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	
속토지(「지방자치법」 제3조	
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	
는 면에 있는, 「지방세법 시	
행령」 제28조제2항에 따른	
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	
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	
한다). 이 경우 별장의 범위	
와 적용기준은 「지방세법 시	
행령」 제28조제3항에 따른	
<u>다.</u>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